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1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주영・박홍배・박해철

박희승 • 정태호 • 박균택

한정애 · 오세희 · 강준현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 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 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기업·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

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태계서비 스지불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방식
 - 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에 사업비 또 는 보유 자산을 기탁하는 방식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 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

- 여, 참여 실적 인정,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 관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하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원센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적 인정·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16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 |
| | 약의 민간 참여 등) ① 법인ㆍ |
| | 단체・개인 등(이하 "민간"이 |
| | 라 한다)은 생태계서비스의 체 |
| | 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
| |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생태계 |
| | 서비스지불제계약에 참여할 수 |
| | <u>있다.</u> |
| | 1.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 |
| | 리인 또는 민간단체 등과 생 |
| | 대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직 |
| | 접 체결하는 방식 |
| | <u>2. 제16조의3에 따른 생태계서</u> |
| | 비스지불제계약 지원센터에 |
| | 사업비 또는 보유 자산을 기 |
| | 탁하는 방식 |
| | ②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 |
| | 지불제계약에 민간 참여가 활 |
| | 성화 될 수 있도록 민·관 협 |
| | 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
| | 실적 인정 등 필요한 행정적 |
| | 지원을 <u>할</u> 수 있다. |
| | ③ 환경부장관은 민간이 제1항 |
| | 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 |

<신 설>

약에 참여하는 경우 생태계서 비스 유지·증진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민간 참여, 참여 실적 인정,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 약 지원센터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서비스지 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운영 · 관 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관을 생태계서비스지불 제계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 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 구하고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에서 기탁되는 기부 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 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원센터는 민간이 참여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위한 사업유형 발굴 및 참여자 수요 조사 등 관한 사항
- 2.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위한 기부금품 등의 접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체 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사업 컨설팅, 참여 실 적 인정·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